

● **환경부령 제118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자는”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7일”을 “14일”로, “14일”을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원본”을 각각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자료를 생산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이후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가 예상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2. 그 밖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 시험자료 외의 자료
-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 ④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및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만 해당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정보”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제35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제35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을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제1호”를 “제3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정보”를 각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2) 물리적·화학적 특성
- 3) 유해성
-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 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 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 한다.

제5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학물질안전원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원본” 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57조 중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 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중 “유해화학물질 등” 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 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중 “유해화학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로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신청사항의 ⑤등록의 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등록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나노물질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별지 제2호서식 제5쪽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등록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	--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계획서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등록의 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나노물질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화학물질의 용도란 다음에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기타사항	
------	--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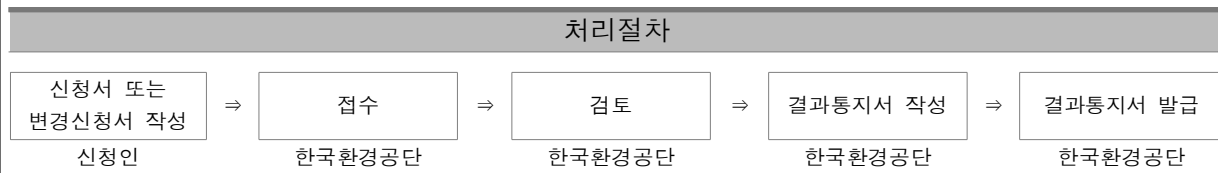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청의 경우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p>작성된 자료</p> <p>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p> <p>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p> <p>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p> <p>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p> <p>2. 변경신청의 경우</p> <p>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p> <p>다.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p>	<p>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p> <p>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p>
---	---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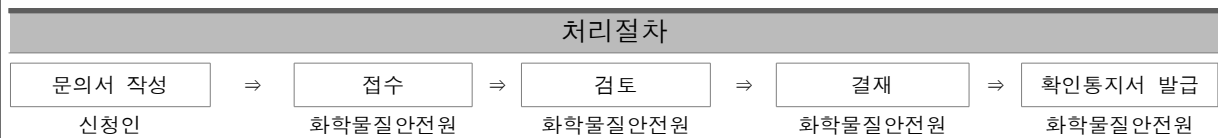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등록 신청사항의 ⑤등록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등록형태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나노물질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	---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심사결과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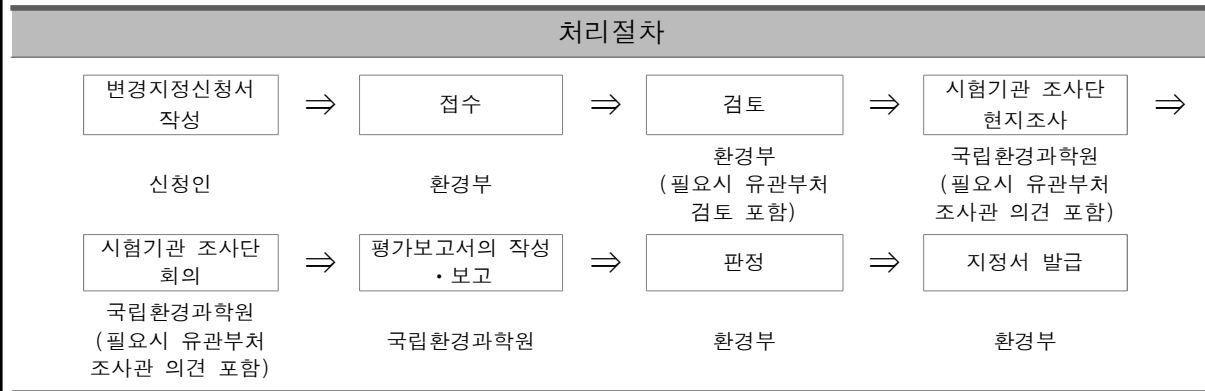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별지 제17호서식 중 심사결과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 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

서를 말합니다)”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1호” 를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수수료 15,000원 (중기업은 7,500원, 소기업은 3,000원)
------	---	---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안전원장·유역(지방)환경청장·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쪽 중 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8호의4서식 뒤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 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위 표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3)·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성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1. 위 표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위 표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1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위 표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 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또는 확장1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 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나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고분자화학물질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1)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1) 제1호2)가)·나)의 시험자료 2) 제1호3)가) 또는 다)의 시험자료 3) 제1호3)나)의 시험자료 4)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2) 1) 외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학물질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6.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 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1)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2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제1호2)·3)에 따른 시험자료 및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7. 나노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가. 입자크기
- 나. 입자크기분포
- 다. 입자모양
-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등을 고려한 시험면제 조건을 말한다)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나.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 다.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 라.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제1호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인 화학물질
 - 나.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9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작성방법에서 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확인한 자료(시험자료·비시험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자료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별표 9의2]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신뢰성
 - 다. 나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지 여부
 - 라.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추가 자료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와 동일한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 나.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신규화학물질 제조 신고서
 수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_____)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_____ / 팩스번호: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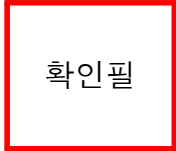
신고사항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 상품명	③ 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 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⑤ 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 분류체계			
		⑦ 범주 및 구체적 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적/전문적 용도(_____)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용도(_____)		
	유해성 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 미확인 항목: <input type="checkbox"/>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input type="checkbox"/>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input type="checkbox"/>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 <input type="checkbox"/> 이분해성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 수입국

⑭ 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4쪽 중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 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등록·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물질 구분	<input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위험성, <input type="checkbox"/> 건강 유해성, <input type="checkbox"/>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 미확인 항목: <input type="checkbox"/>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input type="checkbox"/>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input type="checkbox"/>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 <input type="checkbox"/> 이분해성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분류 표시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분자량			
	등록·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상품명			
	용도(상세기술)					
2. 물 리 적 · 화 학 적 특 성	물질의 상태		물 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인화점		밀도			
	입도		점도			
	나노물질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입자크기	입자모양	종횡비 (縱橫比, aspect ratio)		
3. 분 류 표 시 정 보	구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4. 유 해 성 정 보	물 리 적 위 험 성	항목	독성정보			

		(4쪽 중 제3쪽)	
4. 유해성 정보	인 체 유 해 성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발암성	
		기타	
		환 경 유 해 성	항목
	수생 생물 독성		
	육생 생물 독성		
	이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생물농축성		
	환경 거동 및 동태		
	기타		
5. 노출 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6. 취급 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취급자에 대한 응급 조치방법		
7. 화재시 대처 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8. 누출시 방제 요령	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 요령		

9. 폐기 방법

10. 물질 구분에 따른 규제 정보
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11. 위해성 정보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적습니다.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13. 참고 자료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 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등록번호·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물질 구분	<input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위험성, <input type="checkbox"/> 건강 유해성, <input type="checkbox"/>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 미확인 항목: <input type="checkbox"/>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input type="checkbox"/>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input type="checkbox"/>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성장저해 <input type="checkbox"/> 이분해성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 조 공 정 기 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 해 성 저 감 조 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같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 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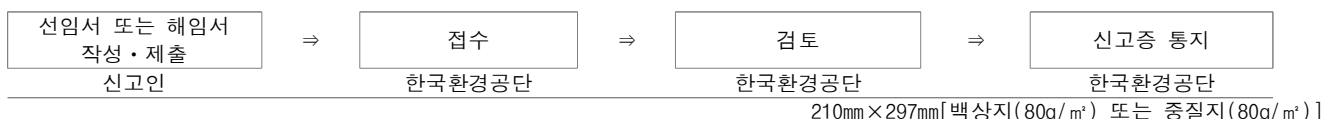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중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대상	정보 구분	[] 유해성 정보 [] 기타 정보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등)		
요청사항			
요청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안전원장·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이용목적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
보유·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정·보완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협의 (필요 시)	⇒	검토 및 협의 결과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보호 자료 [] 보호기간 연장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	-----	-----	------	------------------------------

요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사항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 요지 및 이유
	보호대상 자료 목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료 [] 보호 [] 보호기간 연장 를(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환경)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위 요청사항란 중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 요지 및 이유 칸을 작성할 때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연장)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 등록통지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